

정정신고(보고)

2023년 4월 7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일괄신고서

삼성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H[주식]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14.1.17

3. 정정 내용

- 정기 결산으로 인한 개신(표준편차 변동, 재무정보 확정)
- 외화표시수익증권 평가 방법 명확화
- 기업공시서식개정 반영
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명확화

4. 정정요구·명령 관련 여부: 아니오

5. 정정사항

항 목	정정전	정정후
요약정보		
투자비용 투자실적 추이 운용전문인력		업데이트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5. 운용전문인력	-	업데이트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	가. 투자 전략 및 위험 관리 (6) 이 투자신탁의 환헤지 전략에 따른 목표 환헤지 비율과 환헤지가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. -	가. 투자 전략 및 위험 관리 (6) 이 투자신탁의 환헤지 전략에 따른 목표 환헤지 비율과 환헤지가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. 업데이트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(생략) <위험등급 기준표(연환산 표준편차 기준)> 주2)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(생략) <위험등급 기준표(연환산 표준편차 기준)> 주2)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												
	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자는 23.29% 입니다.	실제 연환산 표준편자는 23.43% 입니다.												
12. 기준가격 산정 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	<p>나.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(1)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 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. *외화표시수익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한다. 다만, 외국 증권시장에서 상장된 외화표시 수익증권은 그 외화표시 수익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의 평가기준일 전날 최종시가로 평가</p>	<p>나.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(1)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 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. *외화표시수익증권 평가기준일의 컷오프 시간(18시) 이내에 발행회사, 가격산정전문회사 또는 증권정보증개기관(블룸버그, 로이터 등) 등이 공고하거나 제공한 최근일의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한다. 다만, 외국 증권시장에서 상장된 외화표시 수익증권은 그 외화표시 수익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의 평가기준일 전날 최종시가로 평가</p>												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- <1,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>(단위: 원)</p>	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- 업데이트 <1,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>(단위: 원) 업데이트</p>												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<p>나. 과세 (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– 원천징수 원칙 1)~2) (생략) 3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사항]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77 943 809 1886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<th>주요 내용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납입 요건</td><td> 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(추가) </td></tr> <tr> <td>세액 공제</td><td> (추가)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% ·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,500만원 이하)는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5% · 종합소득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의 2,000만원 초과)는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% 단, 연금저축 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(추가) 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주요 내용	납입 요건	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(추가)	세액 공제	(추가)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% ·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,500만원 이하)는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5% · 종합소득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의 2,000만원 초과)는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% 단, 연금저축 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(추가)	<p>나. 과세 (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– 원천징수 원칙 1)~2) (현행과 같음) 3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사항]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825 943 1270 1886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<th>주요 내용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납입 요건</td><td> 가입기간 5년 이상 (삭 제)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1. 연간 1,800만원 2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1조의 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 “전환금액”이라 한다.)</td></tr> <tr> <td>세액 공제</td><td>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 1.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 · 종합소득 4,500만원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,500만원 이하)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(삭 제) 2.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 전환 금액의 10% 또는 300만원(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주요 내용	납입 요건	가입기간 5년 이상 (삭 제)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1. 연간 1,800만원 2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1조의 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 “ 전환금액 ”이라 한다.)	세액 공제	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 1.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 (지방소득세 포함) · 종합소득 4,5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,500만원 이하)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(삭 제) 2.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 전환 금액의 10% 또는 300만원 (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 에서 직
구분	주요 내용													
납입 요건	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(추가)													
세액 공제	(추가)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% ·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,500만원 이하)는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5% · 종합소득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의 2,000만원 초과)는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% 단, 연금저축 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(추가)													
구분	주요 내용													
납입 요건	가입기간 5년 이상 (삭 제)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1. 연간 1,800만원 2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1조의 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 “ 전환금액 ”이라 한다.)													
세액 공제	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 1.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 (지방소득세 포함) · 종합소득 4,5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,500만원 이하)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(삭 제) 2.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 전환 금액의 10% 또는 300만원 (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 에서 직													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	<p>단,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</p> <p>연금수령 시 과세</p> <p>연금소득세 5.5~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 단, 이연퇴직소득은 '이연퇴직소득세액 X 70%' 적용</p>	<p>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 종 적은 금액 단,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</p> <p>연금수령 시 과세</p> <p>연금소득세 5.5~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 단,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 아래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 적용 1.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: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% 2.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: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%</p>
분리과세 한도	연간 1,200만원(공적연금소득 제외, 퇴직소득 제외)	<p>연금소득 분리과세</p> <p>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 1. 퇴직 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2. 의료 목적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3. 1호 및 2호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,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단, 연 1,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택 가능 (2023년 1월1일 이후 연금 수령 분부터 적용)</p>
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천재지변 -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-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-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천재지변 -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 -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·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시 - 가입자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-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-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
	<p>※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4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① 세액공제: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</p>	<p>(삭 제)</p> <p>4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① 세액공제: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</p>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	<p>과 합산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최대 400만원 이내의 금액)하여 연간 700만원 한도까지 12%(또는 15%) 세액 공제 (추 가)</p> <p>※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관련 사항 등은 -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 (추 가)</p>	<p>합산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최대 600만원 이내의 금액)하여 연간 900만원 한도까지 13.2%(또는 16.5% 지방소득세 포함) 세액공제 단,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 기준 한도로 작성되었습니다</p> <p>※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관련 사항 등은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</p> <p>※ 연금 세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(https://100lifeplan.fss.or.kr)의 '연금세제안내'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
1. 재무정보	가. 요약재무정보 - (신 설)	가. 요약재무정보 업데이트 [기업공시서식개정 내용 반영] - 주식의 매매회전율 - 증권의 대여/차입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 내역 -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-	업데이트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- 라. 운용자산 규모 -	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.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